

2006. 9.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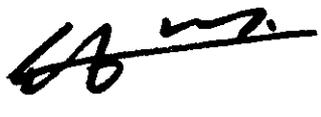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부.

발의자 : 성명중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2인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성명중		
유명화	유명화	
조덕희	조덕희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안번호	1099
------	------

발의연월일 : 2006. 9. .

발 의 자 : 성명중 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4조의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윤리강령)

-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도록 정함.

○ 제3조(윤리실천규범)

-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함.

○ 제4조(윤리심사 등)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시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 붙임 : 1.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1부 끝.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4.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한다.
5.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동 제천”



제 천 시



수신자 제천시의회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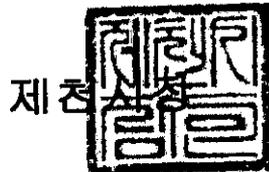
(경유) 의회사무국장

제목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2419(2006. 6. 23)호 및 충청북도 기획관실 -2925(2006. 6.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06. 4. 28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의2에 의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칙」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법규 제·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규칙 표준안 1부. 끝.



★지방행정주사보 김경욱 의회법무담당 최석영 기획감사실장 전결 06/26 최한섭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4411 (2006.06.26.) 접수 의회사무국-901 (2006.06.27.)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15(천남동 12-2) / http://www.okjc.net
전화 043)640-5042 /전송 043)640-5029 / kkouk111@hanmail.net / 공개

조례 · 규칙 표준안

1.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 00시·도(시·군·구)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지방의회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